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78
----------	-----

2022. 1. 2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임동현 의원

나. 제출일자: 2022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2022년 1월 11일

라. 상정일자: 2022년 1월 19일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임동현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 게도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적 소외와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국적 유아의 취학 전 3년간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및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교육부정책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 신설 (안 제3조의2)
- “다문화 예비학교”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으로 용어 변경 (안 제12조)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용어 변경 (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한국 국적의 유아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을 외국 국적 유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예비학교’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으로,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변경하고자 발의되었음.

- 충북 도내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한국 국적 유아와 동일하게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¹⁸⁾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규정을 준수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5월 13일 제78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조례 개정과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충청북도 내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 국적 유아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은 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본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그 취지와 필요성,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외국 국적 학생도 한국 국적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비를 지원하여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교육비

18) 우리나라 1991년 국제연합(UN)에 가입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함.

지원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궁극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안 제3조의2 제3호에 규정한 취학 전 3년의 유치원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시행할 경우, 현재 충북 도내 유치원에는 157명의 외국국적 유아가 재원하고 있어 2022년도에만 유아학비 지원으로 연간 약 3억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이 추진될 수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문화존중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의 제목 “(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지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족”으로, “다문화예비학교를”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다문화예비학교”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문화예비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을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 지정·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점학교” 를 “정책학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중등

제13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중점학교” 를 “정책학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조의2(사업) <u>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문화존중을 통한 다문화이해 <u>교육 사업</u>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u>교육 지원 사업</u>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u>채원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u> 4. 그 밖에 <u>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p>제12조(<u>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감은 <u>다문화가정</u>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u>다문화예비 학교</u>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u>다문화예비학교</u>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u>다문화 예비학교의 장</u>은 <u>다문화가정</u>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p>제13조(<u>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u>)</p>	<p>제12조(<u>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지정·운영</u>) ① -- <u>다문화가족</u> ----- ----- <u>다문화학생 특별학급</u> -----.</p> <p>② ----- <u>다문화학생 특별학급</u> -----.</p> <p>③ ----- <u>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학교의 장</u>은 <u>다문화가족</u> -----.</p> <p>제13조(<u>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u>)</p>

·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중점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 ① -----
----- 정책학교-----
-----.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중등

③ ----- 정책학교 -----

-----.

④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관 계 법 령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9. 9.]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6. 3.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7. 12. 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17. 12. 1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1., 2017. 12. 12.>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17. 12. 12.>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2017. 12. 1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약칭: 외국인처우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7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제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안에 따라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재원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 결과

연간 소요비용 추계		연도별 소요비용 추계(단위: 천원)					
산출기초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 외국국적 유치원 유아에 대한 교육비	2,161,800	357,000	394,680	432,360	470,040	507,720	2,161,800
가. 공립유	1,436,400	226,800	257,040	287,280	317,520	347,760	1,436,400
나. 사립유	725,400	130,200	137,640	145,080	152,520	159,960	725,400

나. 산출 결과

(단위: 원, 명)

구분	단가	원아수	지원개월수	금액	비고
2022년					
공립유	150,000	126	12	226,800,000	
사립유	350,000	31	12	130,200,000	
합계		157		357,000,000	
2023년					
공립유	170,000	126	12	257,040,000	
사립유	370,000	31	12	137,640,000	
합계		157		394,680,000	
2024년					
공립유	190,000	126	12	287,280,000	
사립유	390,000	31	12	145,080,000	
합계		157	12	432,360,000	
2025년					
공립유	210,000	126	12	317,520,000	
사립유	410,000	31	12	152,520,000	
합계		157		470,040,000	
2026년					
공립유	230,000	126	12	347,760,000	
사립유	430,000	31	12	159,960,000	
합계		157		507,720,000	

- 2020~2022년 유아학비 지원상승률 반영 (2020년 공립유 110천원, 사립유 310천원/ 2021년 공립유 130천원, 사립유 330천원/ 2022년 공립유 150천원, 사립유 350천원/ 매년 20천원 상승 금액 반영)
- 원아수는 2021년 공·사립유치원 외국 국적 유아수(2021.4.1.기준)로 동일 작성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357,000	394,680	432,360	470,040	507,720	2,161,800	
세 출							
외국국적 유치원 유아에 대한 교육비	357,000	394,680	432,360	470,040	507,720	2,161,8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57,000	394,680	432,360	470,040	507,720	2,161,8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57,000	394,680	432,360	470,040	507,720	2,161,8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